

의안번호	2220031
의 퇴 인	박지원의원
회 답 일	2026.9.2.
추계번호	26B367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1)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 (정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임

- 현행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¹⁾ 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55개임

[표 1] 산업단지 지정 현황

(단위 : 개, 천㎡, %)

단지 유형	산업 단지 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 면적	분양 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
국가	55	802,695	490,489	312,118	283,398	275,359	8,039	97.2
일반	768	593,366	579,384	356,423	284,774	271,816	12,958	95.5
도시 첨단	55	14,537	13,578	6,782	3,563	2,553	1,010	71.7
농공	486	78,467	77,963	59,187	57,296	55,546	1,750	97.0
총합	1,364	1,489,065	1,161,414	734,510	629,031	605,274	23,757	96.2

자료: 국토교통부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의 규모 및 개소 수, 국가의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1)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2.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